[4단계 BK21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세부 규정

(2021년 8월 5일 제정)
(2023년 7월 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 및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학자를 초청하는 데 있어 초청 대상, 초청 형식, 초청시 학자의 활동 범위, 초청학자에 대한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본 규정에서 '해외석학'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자를 의미한다.

(2) 본 규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학자'는 타 기관의 초청, 단기간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학자를 의미한다.

제3조(초청대상)

(1) 초청학자는 정규대학 또는 그에 상응한 기관의 전임 교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초청의 목적이나 연구의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된 때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자라도 초청할 수 있다.

① 학자가 속해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② 학자의 연구영역에 있어서의 지명도
③ 학자의 논문 등의 연구성과
④ 기타 사업단에서 사안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초청형식)

(1) 외국 학자를 초청함에 있어서 그 초청 여부, 활동 범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담당 교수를 둔다.

(2) 외국학자 초청시 초청의 주체는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으로 하며, 최소 1개월전 사전신청 이후 국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3) 재원 부담자나 초청학자의 활동 범위에 따라 초청의 주체가 타기관과 중복될 수 있다.

제5조(초청학자의 활동)

(1) 외국학자의 초청 시 그 구체적 활동은 학자와 협의해서 정한다.

(2) 담당교수는 당해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안을 미리 마련하여 당해 초청 주체의 승인을 맡도록 한다.

(3) 초청학자의 공개 세미나를 1회이상 권고한다.

제6조(해외석학초청시 지급 기준)

(1) 본 사업단이 초청의 주체로서 강연을 위해 외국학자를 초청하는 경우 왕복 여비 및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외학자 초빙지원은 사업단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3,000,000원(일금 삼백만원)으로 제한한다.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출장비 산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비용은 사업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제7조(본 사업단 단독 초청 이외의 경비 지급) 본 사업단 이외의 타기관이 초빙하거나 본 사업단과 타기관이 공동으로 초빙하는 경우 강연 또는 세미나의 횟수에 따라 당해 초청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제8조(보고) 초청을 주관한 BK참여교수는 초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초청학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하고, 향후 실적 발생시 추가 보고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국제협력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